한국지도학회 시행세칙

- 제1조(목적) 본 시행세칙의 목적은 한국지도학회(이하 학회) 정관 제35조(시행세칙)에 의거 학회 운영에 필요한 규 정을 정하는 것이다.
- 제2조(회비) 연회비의 금액과 납부시기,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.
 - 연회비는 임원 100,000원, 정회원 30,000원, 준회원 10,000원이며, 납부 시기는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로 하다
 - 2. 회비는 학회 구좌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- 3. 명예회원과 특별회원, 군복무 중인 회원은 회비를 면 제한다.
 - 4. 만 65세 이상의 정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.
- 제3조(표창) 학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표창한다.
- 제4조(사무국 구성) 본 학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총무부에 사무국을 둔다.
 - 1. 사무국의 직원은 총무부장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임 명하다
 - 2.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직원을 두고, 일정액의 급여 를 지급한다.
 - 3. 사무국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- 제4조(사무국의 업무) 사무국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학회의 제반 행정 및 일반 사무
 - 2. 이사회에서 결의된 회무
 - 3. 회장 또는 총무부장이 위임한 업무
 - 4. 본회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업무
 - 5. 각종 회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, 보관에 관한 업무
 - 6. 분과위원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업 보고에 관한 업무
- 제6조(고문 및 명예회장) 학회는 다음과 같이 고문 및 명예 회장을 둔다.
 - 1. 고문은 전직 명예회장 또는 학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원로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 한다.

- 2. 명예회장은 전직 회장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.
- 제7조(분과위원회) 학회의 전문분야별 연구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.
 - 1. 국제교류분과위원회: 국제지도학회 및 관련 국제학회 간에 교류.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.
 - 2. 지도교육분과위원회: 지도 및 지도학에 관한 교육 훈 련과 각급 학교의 지도 교육을 지원, 육성하는 사업을 수행한다.
 - 3. 고지도분과위원회: 고지도 및 지도 발달사에 관한 연구 사업을 수행한다.
 - 4. 지도제작분과위원회: 지도 편집 및 제작 전반에 관한 기술과 정보, 실제 응용에 관한 연구사업을 수행한다.

제8조(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

- 1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
- 2. 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20인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,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임명할 수 있다.
- 3.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4. 위원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9조(분과위원회 사업 수행)

- 1. 분과위원회 사업은 위원장의 책임 하에 수행하고, 사업시행 후 15일 이내에 업무보고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2. 분과위원회에서 연차 사업계획에 없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 아야 한다.

제10조(분과위원회 회의)

- 1. 분과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- 2.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3.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재산의 관리)

1. 학회의 재산은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
- 단, 학회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부에 한하여 처분하거나 담 보로 제공할 수 있다.
- 2. 학회 사업수행 상 필요한 예산은 사업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부족분에 한해서만 학회기금에서 보조한다.
- 3. 수지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학회 재산에 편입시키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.

제12조(간접비의 관리)

- 1. 학회 명의로 프로젝트(외부 용역 사업)를 수주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이 간접비를 징수한다.
 - 가. 업체(또는 개인)가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수행하는 경우: 수주금액의 2~5%

- 나. 학회와 업체(또는 개인)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 주하고 수행하는 경우 : 수주금액의 6~10%
- 다. 학회가 주도하여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수행하는 경우: 수주금액의 10~15%
- 2. 구체적인 간접비 요율은 학회와 업체(또는 개인)가 협 의하여 결정하되, 당분간은 최저 요율을 적용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.
- 3. 간접비를 적게 징수하는 대신 프로젝트 수행 관련 업무는 업체(또는 개인)에서 주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본 시행세칙은 2005년 8월 26일 임시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.

국제교류분과위원회 규정

제1조(목적)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지도학회(이하 학회) 정관 제28조 및 시행세칙 제7조에 규정한 분과위원회의 하나로서 국제지도학회 및 회원국과의 교류 · 협력 사업 을 수행하고 해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다.

제2조(소재 및 명칭)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지도학회 내에 두며, 국제교류분과위원회(이하 위원회)라 한다.

제3조(구성 및 조직)

- ①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 및 간사를 둔다.
- ② 위원장은 학회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, 위원회의 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- ③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, 연락, 회의록 작성,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업무를 대리한다.
- ④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고, 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 학회의 총무부장은 당연직 위 원이 되며,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준한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.

- ① 국제지도학회 관련 총괄 업무
- ② 국제지도학회 회원국 상호간의 교류 및 협력 사업
- ③ 국경 및 영토 분쟁과 관련된 연구
- ④ 본 학회의 대내외 홍보
- ⑤ 해외 정보 수집
- ⑥ 국가보고서(National Report) 작성
- ⑦ 국제학술대회 유치와 관련된 업무

제5조(회의)

-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회의는 매년 1/4분기에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 장 또는 재적위원 1/3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위원장은 회의 내용을 회장에게 보고하고, 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다.

제6조(재정) 위원회 고유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일체의 경비는 학회에서 지원한다.

부 칙

지도제작분과위원회 규정

제1조(목적)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지도학회(이하 학회) 정관 제28조 및 시행세칙 제7조에 규정한 분과위원회의 하나로서 지도제작에 관련된 각종 연구 및 지원 활동이 목적이다.

제2조(소재 및 명칭)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지도학회 내에 두며, 지도제작분과위원회(이하 위원회)라 한다.

제3조(구성 및 조직)

- ①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 및 간사를 두다.
- ② 위원장은 학회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, 위원회의 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- ③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, 연락, 회의록 작성,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업무를 대리한다.
- ④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고, 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 학회의 편집부장은 당연직 위 원이 되며,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준한다.
- ⑤ 지도 출판 및 제작 업체, 지도 유통업체, 지도 제작 기법 연구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위원을 위촉한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.

- ① 지도 제작에 대한 자문
- ② 지도 제작 기법 향상에 대한 연구
- ③ 도로교통지도 등 판매지도에 대한 심의
- ④ 해외 배포용 국내 지도에 대한 심의
- ⑤ 외국에서 제작된 지도의 수집 및 분석
- ⑥ 기타 지도 제작 관련 주요 사항

제5조(회의)

-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회의는 매년 1/4분기에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 장 또는 재적위원 1/3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위원장은 회의 내용을 회장에게 보고하고, 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다.

제6조(재정) 위원회 고유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일체의 경비는 학회에서 지원한다.

부 칙

고지도분과위원회 규정

제1조(목적)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지도학회(이하 학회) 정관 제28조 및 시행세칙 제7조에 규정한 분과위원회의 하나로서 고지도에 관련된 각종 연구 및 지원 활동이 목 적이다.

제2조(소재 및 명칭)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지도학회 내에 두며, 고지도분과위원회(이하 위원회)라 한다.

제3조(구성 및 조직)

- ①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 및 간사를 둔다.
- ② 위원장은 학회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, 위원회의 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- ③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, 연락, 회의록 작성,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업무를 대리한다.
- ④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고, 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 학회의 총무부장은 당연직 위 원이 되며,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준한다.
- ⑤ 고지도 전문연구자, 고지도 관련 업무 수행자를 우선적 으로 위원으로 위촉한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.

- ① 고지도의 발굴 및 수집
- ② 고지도의 연구
- ③ 영토 분쟁, 지명 분쟁 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
- ④ 고지도 관련 각종 프로젝트 수주
- ⑤ 기타 고지도 관련 주요 사항

제5조(회의)

-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회의는 매년 1/4분기에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 장 또는 재적위원 1/3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위원장은 회의 내용을 회장에게 보고하고, 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다.

제6조(재정) 위원회 고유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일체의 경비는 학회에서 지원한다.

부 칙

지도교육분과위원회 규정

제1조(목적)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지도학회(이하 학회) 정관 제28조 및 시행세칙 제7조에 규정한 분과위원회의 하나로서 지도와 관련된 각종 교육 및 지원 활동이 목적 이다.

제2조(소재 및 명칭)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지도학회 내에 두며, 지도교육분과위원회(이하 위원회)라 한다.

제3조(구성 및 조직)

-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 및 간사를 두다.
- ② 위원장은 학회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, 위원회의 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- ③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, 연락, 회의록 작성,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업무를 대리한다.
- ④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고, 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 학회의 학술부장은 당연직 위 원이 되며,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준한다.
- ⑤ 지도 교육 전문가, 독도법 교육 종사자를 우선적으로 위 원으로 위촉한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.

- ① 초중등학교 지도 교육의 활성화
- ② 지도 교육 관련 교재 및 교수-학습 방법 개발
- ③ 학생 및 일반인 대상 독도법 교육
- ④ 지도 관련 유공자 선정 및 포상
- ⑤ 기타 지도 교육 관련 주요 사항

제5조(회의)

-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회의는 매년 1/4분기에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 장 또는 재적위원 1/3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위원장은 회의 내용을 회장에게 보고하고, 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다.

제6조(재정) 위원회 고유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일체의 경비는 학회에서 지원한다.

부 칙